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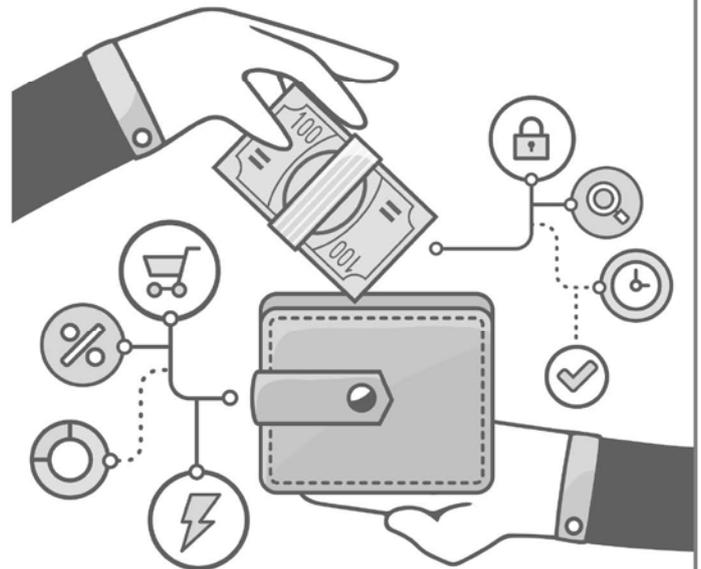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2018. 9. 3(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018. 9. 5(수)  
대전(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2018. 9. 10(월) 오전,오후  
서울(명동 포스트타워 대강당)

2018. 9. 11(화)  
대구(엑스코 오디토리움)



국민권익위원회



## ■ 워크숍 진행순서

시간(오전, 오후)		주요 내용	비고
9:40~10:00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0:00~10:40 14:00~14:40	40'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및 판례	청탁금지제도과
10:40~11:00 14:40~15:00	20'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보호보상정책과 / 신고자보호과
11:00~11:20 15:00~15:20	20'	행동강령 유의사항	행동강령과
11:20~11:50 15:20~15:50	30'	질의응답	청탁금지해석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정책과 / 신고자보호과)
11:50~12:00 15:50~16:00	10'	설문지 작성 및 폐회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및 판례 ..... 1

2. 신고자 보호 · 보상 유의사항 ..... 27

3. 행동강령 유의사항 ..... 43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및 판례 ..... 1

2.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 27

3. 행동강령 유의사항 ..... 43

1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및 판례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 청탁금지법의 이해

 국민권익위원회

투명사회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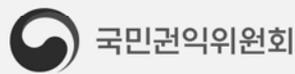
## 청탁금지법의 이해

### CONTENTS

- I. 부정청탁의 금지
- II. 금품등의 수수 금지
- III.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IV. 사례 및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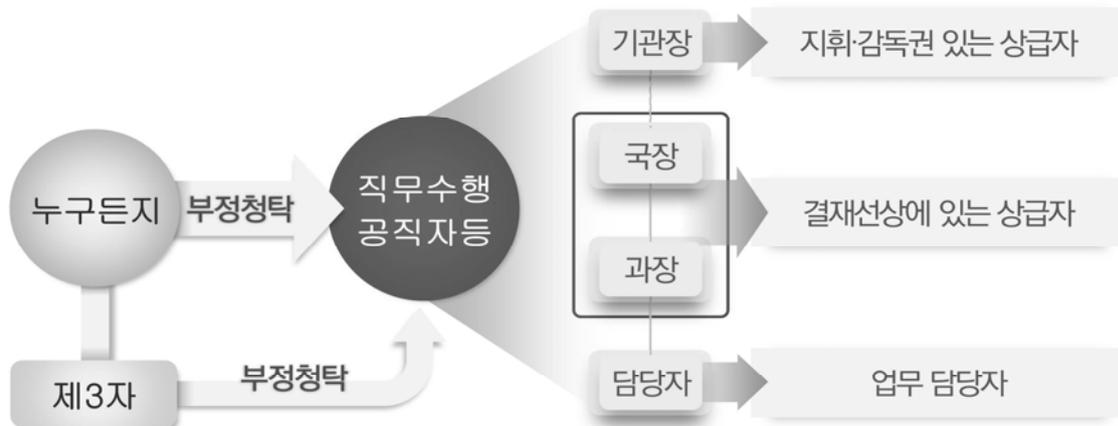
# 부정청탁의 금지



## I.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
| 3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6.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8가지

- |                                           |                                               |
|-------------------------------------------|-----------------------------------------------|
|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
|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액 범위 조정 등 주요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3만원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청렴의지 강화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현금 유사, 사용내역 추적 곤란, 부패 취약

## 참고



Q.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가액 범위

Q.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줄 경우 가액 범위

A.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 다만, 그 외 선물은  
5만원 초과 불가**

A.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 다만, 조의금은 5만원  
초과 불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구 분		기 존	변 경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총액 제한(150%)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 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 IV

## 사례 및 판례



국민권익위원회

## 1. 부정청탁

### 인정 사실

- 청탁자 :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
- 공직자 :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

### 판 단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5백만원 과태료 부과

## 2. 금품등 수수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일부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업체 회장
- 공직자 :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 금 품 : '16.10.21. 현금 200만원을 수수

### 판 단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공직자에 벌금 500만원 부과

### 3. 외부강의

#### 인정 사실

- 공직자 : 공공기관 직원
- 내 용 : '16.9.29.~'17.5.25 기간 동안 14차례에 걸쳐 1,070여 만원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

#### 판 단

- 초과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500백만원 부과

### 4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고소인
- 공직자 :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
- 금 품 : '16.9.28. 고소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통해 공직자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였고, 공직자는 반환 및 신고

#### 판 단

-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자에 과태료 2배(9만원) 부과

5

 인정 사실

- 제공자 : 행정심판 청구인
- 공직자 : ○○중앙행정기관 안건 담당자
- 금 품 : '16.12.2. 공직자가 신혼여행 증임을 알고 청구인이 5만원을 우편환으로 발송하여 반환 및 신고

 판 단

-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 제기 후 업무관계였던 점, 제공자가 우연히 안건 담당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제공자는 전화통화로 우편환 발송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 하였던 점, 우편환 발송 전후로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제공자 에게 과태료 2배(10만원) 부과

6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 마을 이장들 71명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회장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장에 재직하다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발령받은 자
- 금 품 : 송별 행사에서 이장협의회 명의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전별금 유사 명목으로 전달

 판 단

-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한 경우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2배(6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 관내의 건축사무소 운영자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도시건축 관련 부서 직원
- **금 품** : 함께 골프를 친 후 13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대납

 판 단

- 제공자는 ○○기초자치단체 관할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따라서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2배(26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의 A구축사업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 받은 업체 대표이사
- **공직자** : 위 용역계약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직원
- **금 품** :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위 공직자를 수신자로 한 편지와 2만5천원 상당의 구움선물셋트를 두고 갔고, 공직자는 이를 반환 및 신고

 판 단

- 편지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하였으므로 위 용역계약을 연장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
-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가액이 2만5천원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과태료 2배(5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급식재료 납품 업체의 품질부장
- **공직자** : 납품 대상 고등학교의 영양교사
- **금 품** : 급식용 찌빵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 발견 민원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소매가 71,820원 상당의 만두 1박스 제공

 판 단

- 영양교사는 급식재료의 검수·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음
- 제공한 만두의 가액이 5만원을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출고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양교사에 대한 납품업체 직원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립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 **공직자** :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
- **금 품** : 16만원 상당의 떡을 초등학교 교무실 옆 회의실에 두고 감

 판 단

-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과태료 2배(32만원) 부과

# 11

##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 △△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사무국장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과 직원 2인
- **금 품** : 소고기, 소주 등 각 5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

## 판 단

-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 과태료 2배(20만원) 부과

# 12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 체육프로그램 강사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직무담당 공무원
- **금 품** : 회식비용으로 20만원을 제공

## 판 단

- 과태료 2배(40만원) 부과

# 13

## 인정 사실

- **제공자** : 홍보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고문
- **공직자** : 홍보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관
- **금 품** : 홍보관 운영자로부터 전기렌지 구입비용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아 위 경찰관의 집에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설치

## 판 단

-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
- 제공 금품의 가액, 제공 경위, 위반사실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2배(160만원) 부과

# 14

## 인정 사실

- **제공자** : 대학교 ○○학과 재학 중인 학생
- **공직자** : 대학교 ○○학과 조교수(지도 및 성적 평가)
- **금 품** : 생일 축하를 위해 3만~4만원을 각출하여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만원 상당의 케이크, 1만원 상당의 꽃다발 교부

## 판 단

-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동아리 지도교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일파티 기획, 대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의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2배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 공직자 : 자녀의 담임교사
- 금 품 : 9만8천원 상당의 홍삼정 에브리타임 모바일기프티콘을 선물

 판 단

- 직무와 관련하여 9만8천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고, 법 제8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과태료 약2배(2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월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의 직원
- 공직자 : 공공기관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
- 금 품 : 광고게재 관련 면담 후 24만원 상당의 연극초대관람권 6매를 우편으로 송부

 판 단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광고게재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태료 2배(48만원) 부과

# 17

## 인정 사실

- **제공자** : '17.2.2. 산업재해로 인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 10.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
- **공직자** : 요양급여 승인 업무 담당자
- **금 품** : '17.2.21. 소포로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 1박스를 발송

## 판 단

-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9,7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과태료 약 2배 (2만원) 부과

# 18

##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과 홍보 계획 및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부사장
- **공직자** : ○○공공기관 직원
- **금 품** : 22만원 상당의 뮤지컬 5석 초대교환권 2매

## 판 단

-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직무관련자인 ○○공공기관 직원, 공사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 공직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감리 담당자(공무수행사인)
- 금 품 : '16.10.11. 4차에 걸쳐 공직자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 및 음주를 제공

 판 단

- 4회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은 과태료 가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으나, 공직자가 '16.10.26. 공사수급인에 28만7천원을 반환한 점, '16.11.7.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폭행 사건 당사자
- 공직자 : 해당 사건 담당 형사
- 금 품 : '17.3.3. 공직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상의 외투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을 넣어둠

 판 단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과태료 2.5배(50만원)를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공공기관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민원인
- **공직자** : 장해보상 관련 업무 처리 담당
- **금 품** : 20만원이 들어있는 우편봉투를 송부

 판 단

- **과태료 2.5배(5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조사 대상 제조업체의 직원
- **공직자** : ○○중앙행정기관 조사 업무 담당자
- **금 품** :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 8종을 함께 넣어 송부

 판 단

- **제공자에 과태료 3배(2만8천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전기공사 업체 직원
- **공직자** : ○○공공기관 사옥관리 담당자
- **금 품** : '16.10.8. 공직자 사무실 책상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놓고 가 반환

 판 단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공자에 과태료 3배(3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는 자
- **공직자** : 세관 조사계 직원
- **금 품** : 세관 조사계 사무실에 방문하면서 세관직원에게 1만원 상당의 박카스 1박스를 제공

 판 단

- **과태료 3배(3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대학교 졸업생 1인, 강사 5인
- 공직자 : 대학 교수
- 금 품 : 각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

 판 단

- 법정한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 청첩장 배포를 넘어 메신저 배경화면 공지, 모바일 청첩장 및 계좌번호 전송으로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위반자의 자발적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3배(36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배우자
- 공직자 : ○○교육원 소속 직원
- 금 품 : 줌 도와 달라는 취지의 편지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을 동봉하여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공직자는 반송 및 신고

 판 단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고, 법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 없음
- 과태료 3배(30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기초자치단체에 보도블럭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
- **공직자** : ○○기초자치단체 이면도로관리 업무 담당
- **금 품** : 12만 8천원 상당의 식사 등 5회에 걸쳐 812,12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판 단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인정 사실

- **제공자** : ○○지원 관내 변호사
- **공직자** : ○○지원 소속 판사
- **금 품** : '16.10.30.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3만원 중 2만8천원을 공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

 판 단

- **제공자에 과태료 4배(11만2천원) 부과**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1 그 간의 경과

- ❑ 범정부점검단(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전수 점검(5.1.~6.30.)
- ❑ 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대국민 발표(7.26.)
  - ※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 지원 현황
    - 감사·감독기관 지원 현황 : 22개 기관, 51건, 지원받은 공직자 96명(국회의원 38명 포함)
    -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황 : 28개 기관, 86건, 지원받은 공직자 165명
- ❑ 권익위,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에 확고한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7.27.)

## 2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①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 근거 마련

- 감독(상급)기관이 부당하게 해외출장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가이드라인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운영지침으로 표준 매뉴얼화하여 반영

#### 반영 주요 내용

-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에 대한 거절 의무화
-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및 감독(상급)기관 감사부서 통보 의무화
- 의무 불이행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 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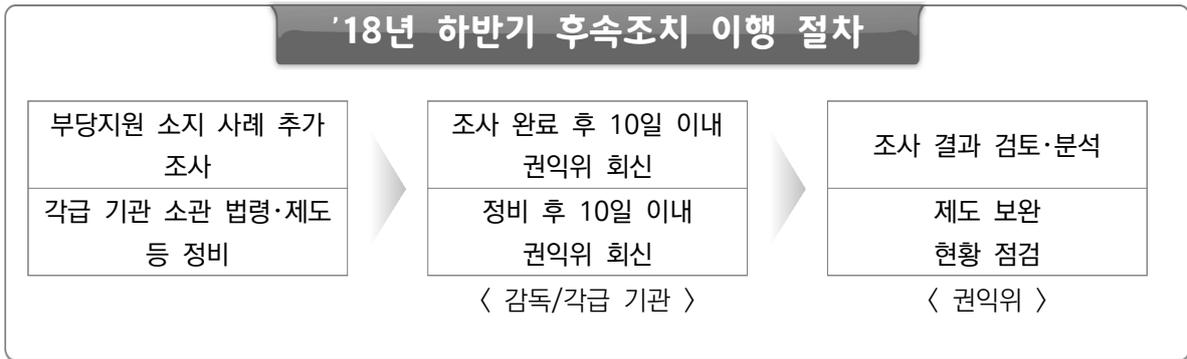
\*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후 실시('18.9월)

### ②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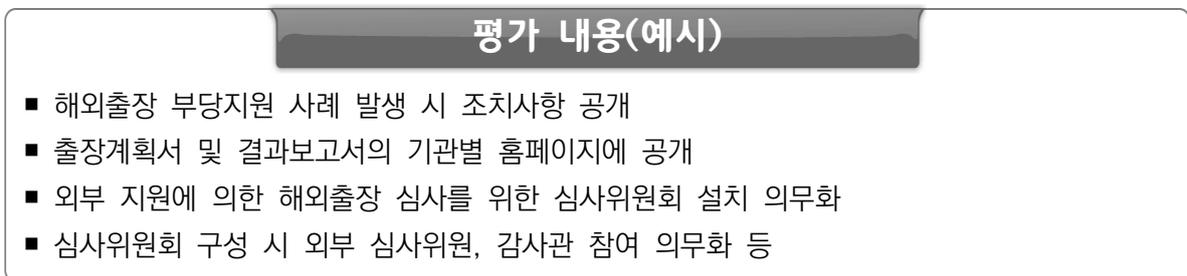
- (간명한 해석기준 마련) 개별 사례에 적용이 용이한 해석기준 제시
  - ※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 예산반영은 있으나 법령·기준이 없으면 예외사유 비해당

- (유권해석 지원) 감독기관이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지원
- (기관간 상이한 처리 방지) 조치 결과 취합 후 기관 간 유사 사례에 대한 처리가 상이한 경우 해당 기관에 설명 및 보충 조사 요청
  - ※ 새로운 법령·기준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한 설명 및 보충 조사 요청 예정

### 3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



- (후속조치 실시) 부당지원 소지 사례를 통보받은 감독기관은 관계자 소명 등 추가 조사 진행, 각급기관은 해외출장 관련 소관 법령·제도 정비
  - 추가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 법령·제도를 정비한 각급기관은 10일 이내 그 결과를 권익위에 회신
  - 권익위는 감독기관별 추가 조사 결과를 검토·분석하고, 기관별 법령·제도 정비 시 청탁 금지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18.12월)
- (평가반영) 공기업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한 실질적 이행 견인
  - 제도보완 대책의 주요내용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이행을 확보



-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감독기관이 평가하도록 하여 전 공공기관의 이행 확보

2

신고자 보호 · 보상  
유의사항







#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 목차



I. 신고자 보호제도

II. 신고자 보상제도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 I. 신고자 보호제도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비밀보장 제도

#### 신분노출 금지

- 인적사항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권익위, 징계권자에게 위반자 징계요구 (법 제15조 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

#### 비밀누설 금지

- 공직자 (신고, 처리업무수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1항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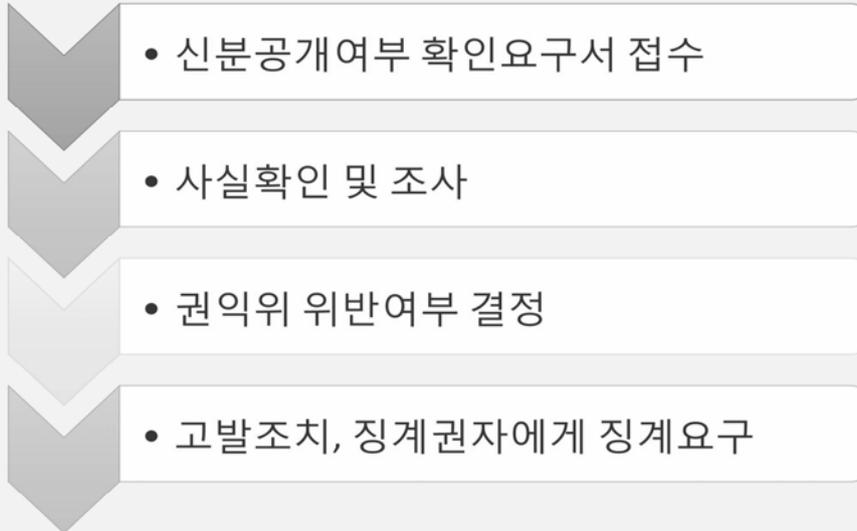
####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 비밀보장 절차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 원인별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b>신고자 색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리의혹 신고에 대해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제보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여 사무국장이 제보자를 포함한 직원들 동의를 받아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제보자 확인</li></ul>
<b>신고를 일반민원으로 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 창구'에 동시에 접수되고, 일반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피진정업체에 송부하여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전화하여 취하 종용</li></ul>
<b>유착관계에 의한 상호 정보교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학교 관련 언론보도가 있자 B기관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기관 출신 A학교 직원 C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상황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내부보고 후,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문건의 사진을 C에게 휴대폰으로 전송</li></ul>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 단계별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b>처리부서 배정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은 신고사건을 모아서 처리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1주일 단위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제보자, 주요내용, 담당부서 등을 포함하여 전 소관부서 직원에게 메모보고</li> </ul>
<b>조사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사항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서를 그대로 피신고자에게 보여줬으나, 그 신고내용으로 볼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임을 확인</li> </ul>
<b>쟁송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사건 조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A학교 교사들이 소청을 청구하자, A학교에서 소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B교육청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했고, B교육청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A학교에 송부</li> </ul>
<b>보도자료 배포 과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신고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li> </ul>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 1 상담·신고 접수 등 단계에서 비의도적 비밀보장 위반 유의

- ✓ 감사부서 담당자 등 관련자는 접수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문서 등록 시 외부인 열람 제한 등 조치
- ✓ 최초 신고 상담 이후 피신고자측 관계자들에 의한 신고자 가장행위, 상담 빙자 탐문통화 등 신고자 탐색 대비 신고자 동일인 여부 확인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 2 사건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 ✓ 접수 경로를 막론하고 모든 민원에 부패(공익)신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부패(공익) 신고에 준하여 처리
- ✓ 신고자 연락 시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조사결과 등 통지
- ✓ 현지조사 시 신고서, 신고상담처리부 등의 서류를 신고 관련 서류를 휴대하지 말고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 요약하여 참조
- ✓ 출장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기관 장비 사용 후에는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등 보안 유의
- ✓ 관련 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시 신고자 인적사항 삭제한 신고서 발송 대신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송부

##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 3 신고 업무 유관 담당자 보안 서약서 징구 및 위반 시 징계 강화

- ✓ 기관별 접수. 조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보안 서약서 징구 및 신고자 정보 유출 시 징계 강화 등 엄정 조치

#### 4 기관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 대상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강화

- ✓ 신고자 보호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하지 않게 신고자 정보를 노출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 2. 신고자·협조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 신변보호 제도

####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방지 요구

-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



#### 신변보호조치

- 권익위,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대책 마련
- 신변보호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변보호절차



-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
- 권익위, 사실확인 및 조사
- 권익위 신변보호 요청
- 관할 경찰서장, 신변보호조치 실시

###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발생 전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불이익조치 발생 후

\*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 불이익 조치자 등에 대한 처벌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불이익조치자

→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 그 외 신분상, 근무상 불이익조치자

→ 1년 징역, 1천만원 벌금

\* 불이익조치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 징계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유형



#####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 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 블랙리스트 작성,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발생 전

#####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
- 불이익조치 금지신청(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불이익조치의 종류(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권익위 결정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발생 후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신청(불이익조치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권익위,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권고
- 화해의 권고(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사실확인 및  
조사



권익위 결정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 신고자 보호조치 사례

사례1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서  
설계비 과다 지출 신고



기관 내부 직원

“하향 전보”

원상회복 요구 등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 요구,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사례2

정부출연기관의  
퇴직금 과다지급 사실 신고



기관 내부 직원

“해임처분”

원상회복 요구 등



해당 기관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  
기관장에는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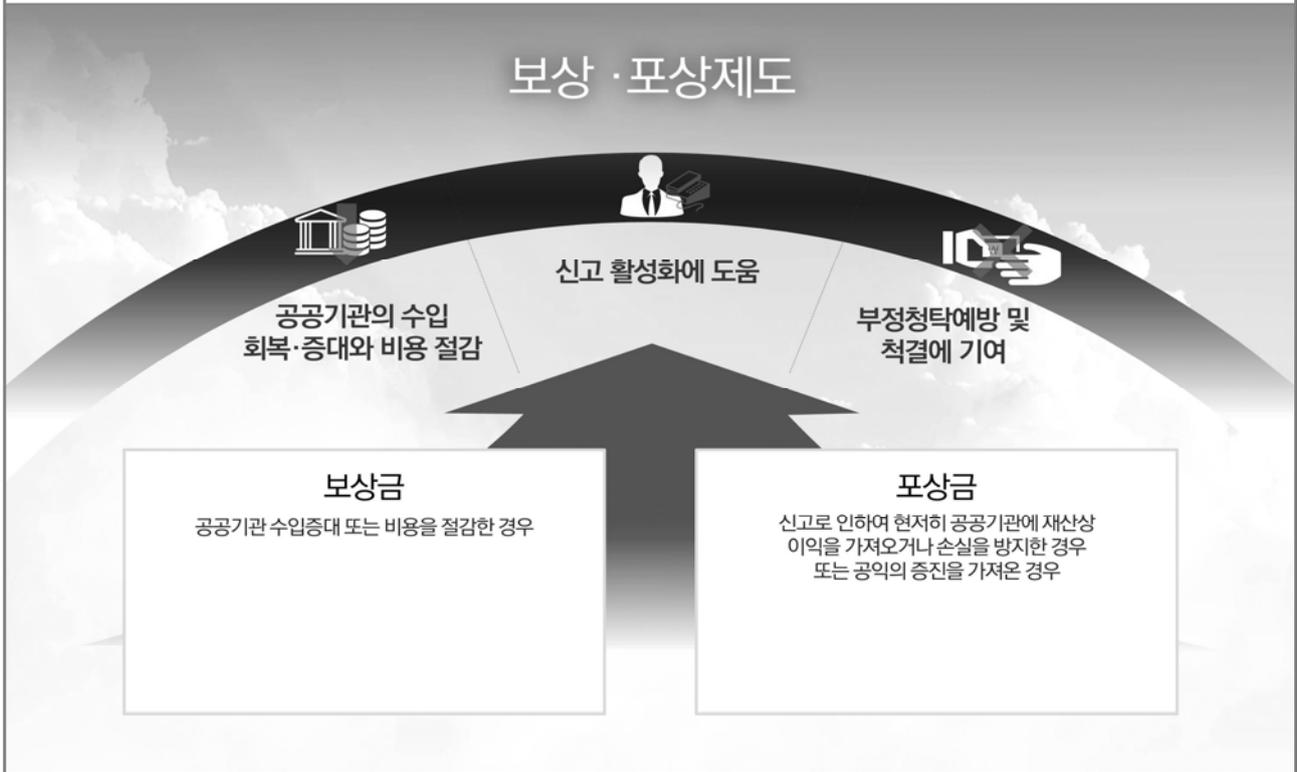
기타 보호제도

신고자·협조자 책임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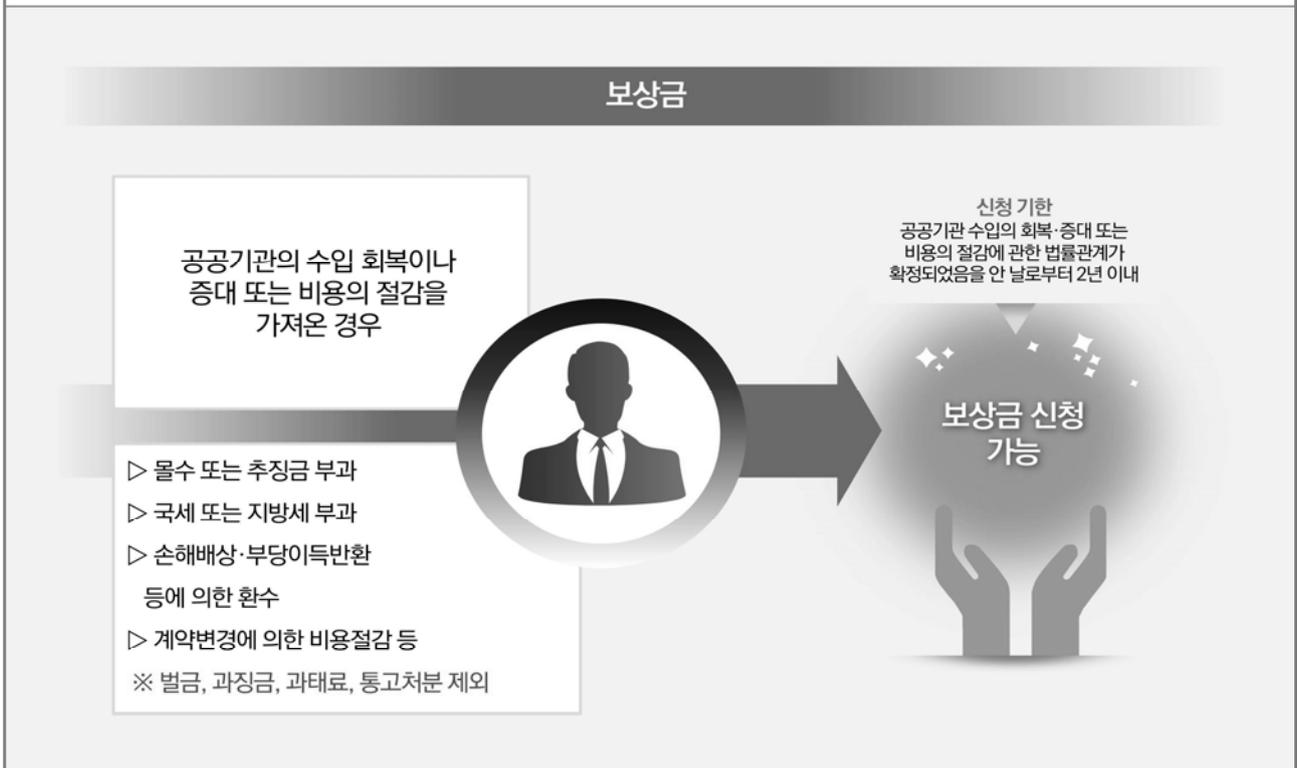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불이익조치의 추정

## II. 보상금·포상금 제도



### 1. 보상금 제도



## 2. 포상금 제도

### 포상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사례

사례1

A업체가 공기업에 원가를 부풀려 장비를 납품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



A업체에 근무하던 B씨

A업체가 편취한 금액 263억여원 전액을 환수 조치



위원회

11억 6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2002년 부패신고자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보상금

사례2

지자체가 발주한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업체의 날림공사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



신고자 C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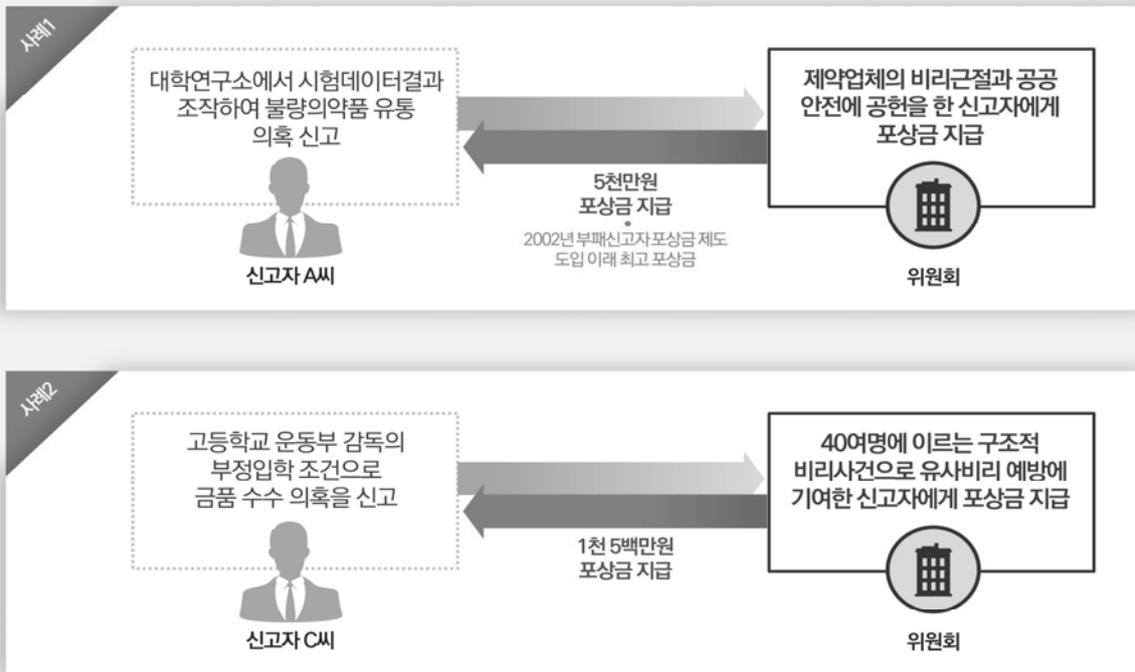
시공업체가 편취한 금액 54억 7천여만원 전액 환수 조치



위원회

4억 5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사례



## III. 공공기관 유의사항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내부신고자에 대한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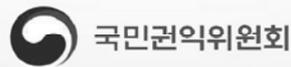
3

행동강령 유의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I. 개요

II. 적용대상

III. 주요내용(기존의 행위기준)

IV. 주요내용(신설된 행위기준)

# 1. 개요 : 행동강령 제정 배경

## 우리나라 사회적특성

-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영향 받음
- 이권 개입 또는 알선·청탁이 문제 의식 없이 행해짐
- 접대나 선물을 관행으로 여김

## 우리나라 공직사회내부의여건

- 공사구분의 불명확
- 공용물 사적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

## 공직자에대한 국민 신뢰저하

- 사회 일반에서 이해관계의 참여화·다양화
- 엄격한 법령적용 요구의 증대
- 시대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요구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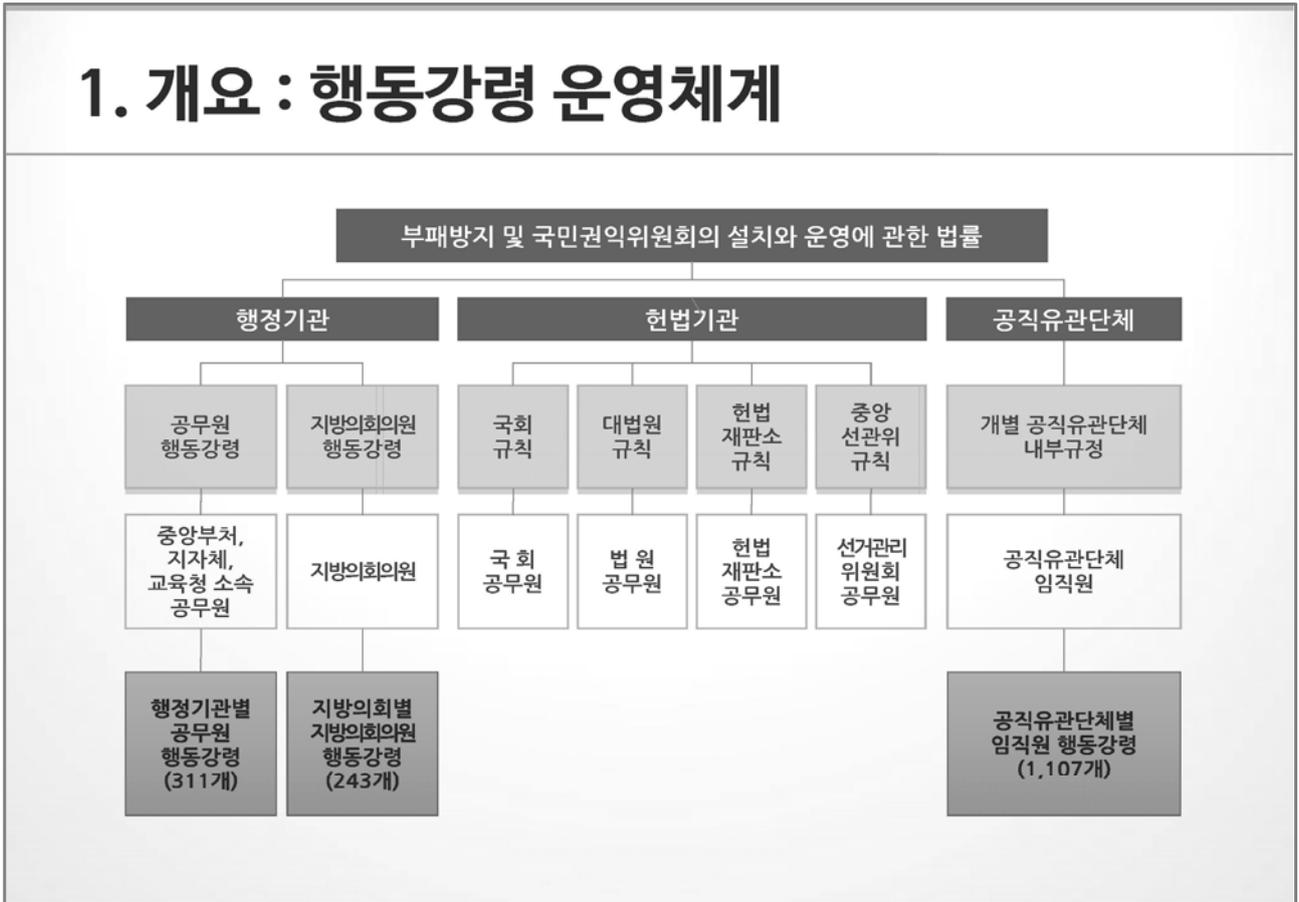
# 1. 개요 : 행동강령 개념

## 2003년부터 제정·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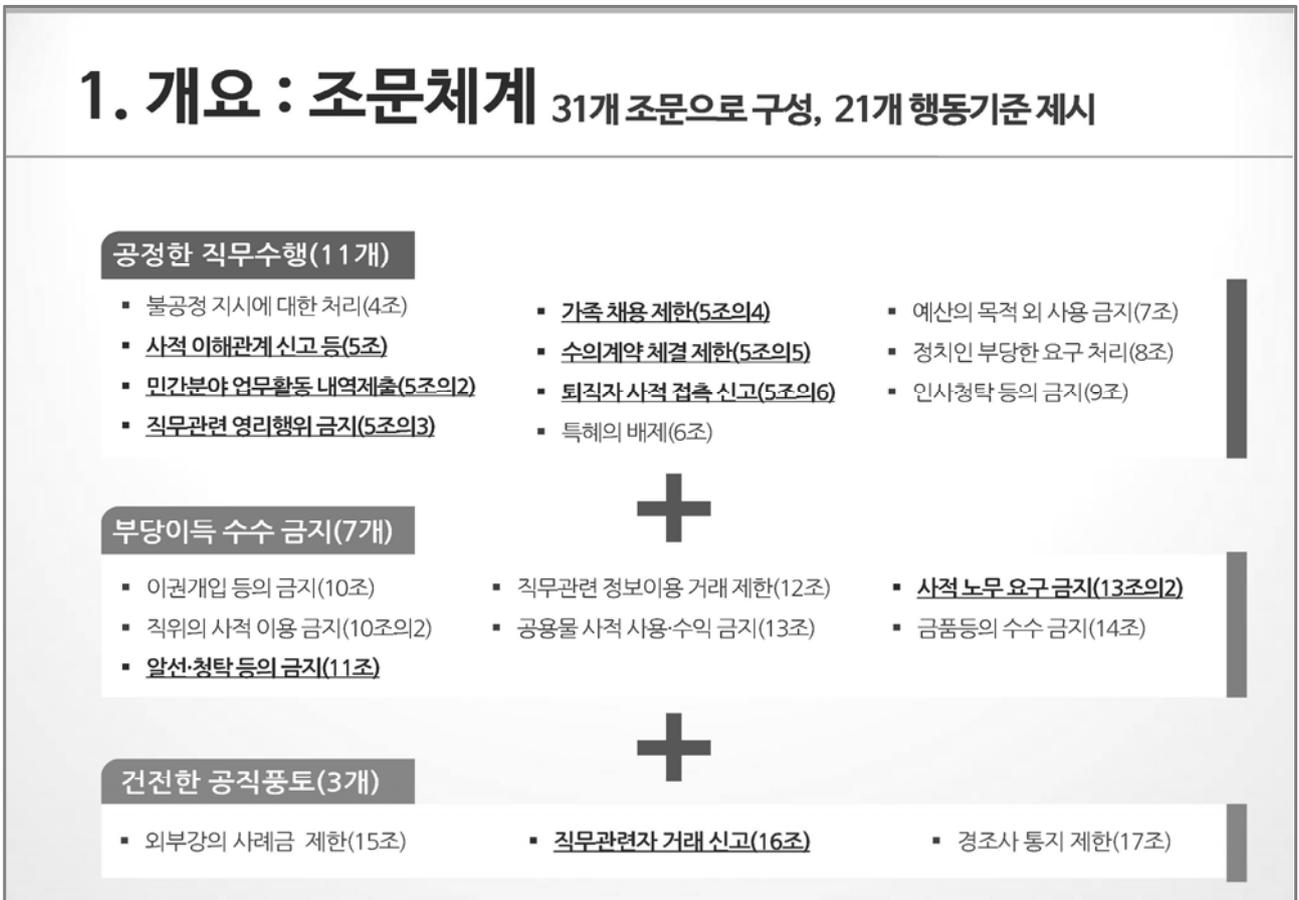
- [공직자의 청렴의무]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게 직무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행동규범을 정함

-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④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 1. 개요 : 행동강령 운영체계



# 1. 개요 : 조문체계 31개 조문으로 구성, 21개 행동기준 제시



## 2. 적용대상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나?

: 공무원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소관업무를 수행시 적용됨

### 직무관련자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 개인·법인·단체

-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자
-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정책, 사업 등의 결정·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
- 그 밖에 기관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2. 적용대상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나?

: 공무원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소관업무를 수행시 적용됨

###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상대공무원

-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 예산, 감사, 상훈, 평가 등 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공무원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처리(제4조)

-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법령위반, 사적이익추구등)에 대해 사유 소명후 거부 가능
- ✓ 부당한 지시 반복시, 하급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소관기관장은 해당 지시의 변경, 상급자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 가능

#### 위반사례

- 수학여행 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해당 업체의 하자품에 대해서 합격 처리 하도록 부당지시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특혜의 배제(제6조)

- ✓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고향후배라는 지연을 이유로 특정 직원의 근무 평점을 잘 주는 경우
- 자녀나 지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기관의 계약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7조)

- ✓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관용카드를 심야에 유흥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
- 부서장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 소속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

#### • 인사와 관련된 청탁의 금지(제9조)

- ✓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금지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군청 과장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관내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 예약을 하게 해줌
- 물품구매 담당자가 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조의2)

✓ 직무 범위를 벗어나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친구의 사업장 개업식에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한 축하화환을 보내어 전시
-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의 출판물에 기관명과 직위를 명시하여 추천사를 게재
- 교수 출신 장관이 학교제자의 추천장에 장관명의 사용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위반사례

- 공무원이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 취득 후 차익 실현
- 건설부서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가격 상승 후에 이를 매각해 수억 원의 차익 실현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공용물의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 공용물(차량, 선박 등)과 부가서비스(항공 마일리지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사용 : 공용물의 본래 제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위반사례

- 공용차량을 소속 공무원이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
- 공용차량 급유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소유의 개인차량에 주유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

-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 年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금지
- ✓ 직무와 관련 시에는 대가성, 금액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금지
- ※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다른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 위반사례

- B공기업 임원이 직무관련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 옴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 ✓ 직무 관련 또는 지위·직책상 영향력에 따른 외부강의 등은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 ✓ 사례금은 행동강령의 사례금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이하로 제한 가능

#### 위반사례



- 현직교사가 신분을 숨기고 신고 없이 타 지역 학원에서 외부강의 수행
- 도시건축국장이 특정 매체에 건축정책에 대하여 기고하고 과도한 수당을 받음

### 3. 주요내용 : 기존의 행위기준(2003~현재)

####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제한

※ 경조사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결혼, 사망의 경우만 해당  
(본인승진, 전보, 출산, 회갑 등은 '경조사' 에서 제외)

#### 위반사례

- A구청 B국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자에게 FAX 통보
-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들에게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배포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 직무관련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 공무원 자신 ▷ 4촌 이내의 친족 ▷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 ▷ 공무원 자신·가족이 재직, 대리, 조연·자문을 제공하는 자
- ▷ 공무원 자신·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가지는 법인·단체

✓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 정지, 직무의 재배정, 공동수행자나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 조치 가능

#### 관련사례

-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
- 대형 건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A 회사에 최고 평가 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 ✓ 고위공직자는 취임·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임용·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고위공직자의 범위〉

- ①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② 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 소속기관장 자신이 제출시에는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

#### 관련사례



- A교육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학교에 특별 교부금 등 약 50억 원 가량을 시설비로 지원
- B구청장이 소속기관의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직 임용 전 자신이 근무 했던 C기업과 계약을 체결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 ✓ 공무원에게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의 금지

〈금지되는 행위 유형〉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 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을 대리,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 정부·기관·법인·단체 등 대리 행위   ▪ 직무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 행위 등

- ✓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위에 해당하는 행위시 중지·종료를 명해야

#### 관련사례

- 교육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위탁 받은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받고 정직 처분
- A시청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이 관내 B건설업체의 부동산 개발 계획에 대하여 수 차례 조언을 제공하고 350만원을 수령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가족채용 제한(제5조의4)

- ✓ 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직 기관, 소속·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적용대상 : 고위공직자, 인사 담당자, 산하기관 지휘·감독 담당자

#### 관련사례

- A군청 고위공무원이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며느리가 합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 C 중앙부처의 D산하기관은 직원 채용 시 감독 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그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수의계약체결 제한(제5조의5)

- ✓ 고위공직자, 계약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관련사례

- A군수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계약
- B시청 구매담당 공무원 B는 배우자가 운영 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800만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구매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5조의6)

- ✓ 공직자와 같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동료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 ✓ 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의 사적인 접촉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관련사례



- A 중앙부처 과장이 직무관련자인 퇴직 선배로부터 골프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에 참석
- B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 수수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자를 다른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금지

#### 관련사례

- 세무조사 / 특허심사 공무원이 자신의 민원인에게 세무사 / 변리사 소개
- 친구 아들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중인 동료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
- 동료 공무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도록 청탁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됨
- ✓ 『청탁금지법』과 달리 법령 위반이 없어도 행위 자체만으로 위반효과 발생

#### 금지되는 행위유형

- [출연] 특정인이나 단체에 출자·출연 등을 하도록 개입·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인사]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영향을 미치는 행위
- [비밀] 입찰·경매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등에 개입·영향을 미치는 행위
- [거래] 특정인에게 재화, 용역 등을 정상적 관행을 벗어나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평가]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에 개입·영향을 미치는 행위
- [포상] 각종 수상, 포상, 선발 등에 개입·영향을 미치는 행위
- [감사] 감사·조사 대상자 선정에 개입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 ✓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적 노무(요구·약속 포함) 금지

#### 관련사례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 A기관 기관장이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소속 직원들을 동원

## 4. 주요내용 : 신설된 행위기준(2018.4.17.~)

### • 직무관련자거래 신고(제16조)

✓공직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자신이나 가족이 투자한 법인 등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과 사적인 거래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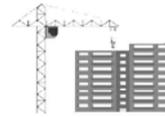
〈신고대상 행위〉

- 금전대차, 유가증권 거래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적 거래(구매, 경매, 입찰 및 공개추첨절차를 거친 거래 제외)
-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 체결(구매를 통한 거래나 불특정다수 대상의 반복적 계약 제외)

✓신고 내용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시 기관장은 직무재배정, 전보 등 조치

### 관련사례

- 공무원 A는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 B로부터 1,500만원 차용
- E군청 소속 공무원이 집을 새로 지으면서 사전 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관내 건설업자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



러가건은 걱정마!

국민권익위원회  
보다 나은 권익위

# 청렴한 대한민국

## 공무원 행동강령이 함께합니다



*Memo*

